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6307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18. 4. 26.
판 결 선 고 2018. 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5. 6.자 환수 조치에 따른 부정사용액 환급금 채무는 9,114,645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¹⁾.

이 유

1) 당초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로서 330,000원을 초과하는 범위에 관한 위 환급금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였으나, 2018. 4. 26. 제3차 변론기일에서 위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였다(제3회 변론조서).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문화산업에 대한 기획·조정에 관한 사업,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2) 피고는 B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으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

나.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약정 체결

1) 원고는 2012. 3. 8.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청년 취업아카데미 운영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연수과정 : 3D 모션 그래픽전문가, 스마트기기앱 개발자, HD 영상제작, 디지털 영상제작, 비디오저널리스트, 융합콘텐츠제작 전문 인력 양성, 융합문화기술품질경영 전문 인력 양성, 게임콘텐츠융합
- 연수인원 : 각 과정별 20명 ~ 30명
- 사업비 : 정부지원금 560,000,000원, 자체부담금 300,000,000원
- 약정이행보증 : 이행보증보험증권
- 약정취업률 : 70% 이상
- 약정기간 : 2012. 3. 8. ~ 2013. 8. 6.(수료 후 6개월 만료 시점)
- 총 연수기간 : 2012. 3. 12. ~ 2012. 12. 31.

2) 이 사건 약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표준 운영약정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1조(사업목적)

이 사건 사업은 기업·사업주단체가 주도가 되어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이하 '연수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연수과정을 개설하

여 이를 취업으로 연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계규정의 준수)

① 원고는 청년 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 및 청년 취업아카데미 세부운영지침(이하 "규정"이라 함)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²⁾」, 청년 취업아카데미 운영 약정에 따라 아카데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본 약정서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규정,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제4조(약정 위반에 대한 조치)

피고는 원고가 지도·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의·시정·약정해지 또는 운영기관 선정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원고는 피고의 제재조치를 수인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약정서(갑 제6호증)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법률은 2011. 7. 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898호, 2011. 10. 26. 시행)"로 개정되었으므로, 법률명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제7조(지원금 지급방법)

① 피고는 약정 체결 후 약정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수생 명단이 확정된 세부운영계획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이후 연수과정별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수과정별로 각각 14일 이내에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선지급한다.

② 원고는 연수생 모집 결과 취업아카데미 개시인원이 약정인원의 90% 이하(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일 경우에는 수정사업비 내역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피고는 수정사업비 승인 후 사업비를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사업비 정산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약정 체결시 약정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지원금 약정 금액 중 잔액 30%는 아카데미 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업률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단, 취업률 산정시에는 연수생이 취업 후 3개월까지 고용이 유지된 경우로 한다.

⑤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취업률에 따라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1. 취업률 70% 이상 달성 : 잔액 30% 지급(지원금 100% 지급)
2. 취업률 70% 미만 달성 : 잔액 20% 지급(지원금 90% 지급)
3. 취업률 60% 미만 달성 : 잔액 10% 지급(지원금 80% 지급)
4. 취업률 50% 미만 달성 : 잔액 지급 없음

제8조(지원금 사용 및 관리)

① 원고는 정부지원금을 해당 취업아카데미 과정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1. 운영기관 자산의 취득

2. C 및 참여기업에 제공하는 현물 또는 현금

3.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4.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5. 기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항목

② 원고는 은행예금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정부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일반 회계 관행에 따라 장부 등에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 정산 및 환수)

① 사업비 정산은 정부지원금 최종 지급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하되, 피고가 지정된 전문 회계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③ 제1항의 사업비 정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 소요비용으로 정산하되 발생이자 등의 수익은 반환 조치한다.

⑤ 회계감사 결과 취업아카데미 운영과 관련 없는 사업집행비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하며, 약정사항을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우에 따라 해당 사업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⑥ 원고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피고는 일방적으로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적정 금액을 제외한 비용을 원고로부터 환수 조치할 수 있다.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증빙서류 포함)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지원금을 취업아카데미 운영 사업비(사업비 사용계획서)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한 경우

다. 원고의 보조금 수령

피고는 원고에게 2012. 3. 9.부터 2012. 9. 6.까지 1차 보조금으로 총 정부지원금의 70%에 해당하는 39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최종 사업결과 보고 후 연수생의 취업률이 58.7%에 이르자 2차 보조금으로 총 정부지원금의 10%에 해당하는 5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환수 조치

1) 피고는 2014. 12. 19.경 원고 직원의 민원제기에 따라,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의 사업진행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진행하였다.

2) 피고는 위 점검 결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83,213,882원 (= 회식비 330,000원 + 인건비 23,100,000원 + 비즈니스 협의회·영상관계자 초청 팸 투어 및 3D 영상산업전 행사비용 59,783,882원)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5. 5. 6. 원고에게 위 83,213,882원에 대하여 환수 조치할 것임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 조치'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환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6. 9. 원고의 보증보험사인 ○○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제6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을 제3, 제6, 제7,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환수 조치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환수 조치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조금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으로 위법하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원고의 자체적인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환수 조치 금액인 83,213,882원 중 원고가 자체적으로 투입한 사업비에서 지급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9,114,64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환급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인정사업비	522,099,237원 = 362,766,747원 + 159,332,490원				
	인정사업비	1차보조금	원고예산으로 선집행		
구분	최종사업비 Ⓐ	인정 사업비 Ⓑ	초과선집행액 Ⓒ=Ⓐ-Ⓑ	불인정금액 Ⓓ	환수금액 Ⓔ=Ⓓ-Ⓒ
금액(원)	448,000,000	522,099,237	-74,099,237	83,213,882	9,114,645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 3, 제1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등 규정에 따른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은 청년 미취업자에게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업능력 등을 반영하여 교육훈련 및 고용지원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운영이 위탁되어 있다(청년 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 제1조 내지 제3조).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의 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그 세부사항을 규정할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며(위 규정 제4조), 피고는 운영기관이 지원금 약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약정해지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위 규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

에 사용하거나(제1호), 법령에 따른 처분 등에 위반하거나(제2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제3호)에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한편, 청년 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의 위임에 따라 피고가 마련한 청년취업아카데미 세부운영지침 제28조 및 이 사건 약정에 포함된 표준 운영약정조건 제9조에 의하면, 운영기관이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증빙서류 포함)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지원금을 취업아카데미 운영 사업비(사업비 사용계획서)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및 기타 관련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피고는 약정을 해지하고, 비용의 환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위 지침 제28조 제7항 등의 문언은 "환수 조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그 근거법령에 해당하는 청년 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 제5조("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반환을 명하여야 한다")의 각 문언에 의하여 위 지침 규정은 근거법령 및 법률의 문언에 반하여 피고에게 비용 환수 조치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한도에서 무효이다. 따라서 위 지침은 위와 같이 "비용의 환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해석되어야 하고, 이는 기속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법률 및 그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들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들 및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 사건 환수 조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민사상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아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나 이 사건 약정의 표준 운영약정조건 제9조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0580 판결 참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인바, 그에 이르게 된 데에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 위반자가 그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 등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환수 조치 금액에 해당하는 83,213,882원을 사업의 목적과는 관련 없이 부당하게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금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환수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점검의 계기가 된 민원 제기는 원고에 근무하였던 직원으로부터 제기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였으며 점검 결과 실제로 민원제기 내용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보조금 부당사용 내역이 적발되었다.

②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원고의 원장 D이 위 83,213,882원에 관하여

사업과 관련 없이 부당하게 지출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각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③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참조), 위 각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규

 판사 김동석

 판사 이상욱

별지

관계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① 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의 개설, E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 ① 정부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기업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 ① 정부는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정부는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이 청년 미취업자 또는 청년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5. 1. 20. 법률 제13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F상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 우선F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기자재를 설치·보수하는 등의 사업
 5.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조사·연구,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의 개발·보급 등의 사업
 6. 삭제 <2010.5.31>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용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을 우대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주 외의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노사협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G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대표자와 협의하여 수립된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4. 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차·연차 유급휴가는 제외한다)를 주어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용자의 요건·내용·절차·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16. 7. 26. 대통령령 제27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 ① 법 제20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의 학습조직·인적자원 개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2. 근로자의 경력개발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3.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
 4.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6.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라 한다) 및 인력개발담당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기업 등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획·운영·평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능력개발 사업
 7. 그 밖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② 법 제20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

- ③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비용의 지원·용자 및 우대 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42조·제48조·제49조·제51조·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년 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직접 청년 미취업자에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과 협력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고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취업아카데미 운영사업"(이하 "아카데미 사업"이라 한다)이란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직접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업능력 및 인력 등을 반영하고 청년 미취업자에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과 협력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고용지원사업을 말한다.
2. "운영기관"이란 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할 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업수행의 위탁 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지원·관리 등 아카데미 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B(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운영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
 2. 아카데미 사업 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운영기관과의 약정(이하 "지원금 약정"이라 한다) 체결
 3. 운영기관의 운영실태 점검 및 지원금 지급·정산
 4. 운영기관의 아카데미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5. 그 밖에 이 예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규정
- ②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 매년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공단은 아카데미 사업이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금 지급 및 정산)

- ① 공단은 지원금의 신청, 지원절차, 정산방법 및 환수 등 제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 ② 운영기관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지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최종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지원금의 신청, 관리·정산, 환수에 관한 사항 중 이 예규 또는 지원금 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약정 위반에 대한 조치)

공단은 운영기관이 지도·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지원금 약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금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주의·시정요구·약정해지 또는 운영기관 선정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청년취업아카데미 세부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B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청년취업 아카데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사업비 정산)

- ① 운영기관은 정부지원금이 최종 지급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에 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정산은 공단에서 지정한 전문 회계법인에 의해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정산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소요비용으로 정산하되 발생이자 등의 수익은 반환 조치한다.
- ⑥ 회계감사 결과 취업아카데미 운영과 관련 없는 사업집행비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하며, 약정사항을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사업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⑦ 운영기관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단은 일방적으로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적정 금액을 제외한 비용을 운영기관으로부터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증빙서류 포함)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2. 지원금을 취업아카데미 운영 사업비(사업비 사용계획서) 목적외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 3.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한 경우 등
- ⑧ 지원금의 신청, 관리·정산, 환수에 관한 사항 중 본 지침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